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.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심 사 보 고 서

2005. 9.
행 정 위 원 회

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8월 25일 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05년 9월 2일 회부
다. 상정일자 : 2005년 9월 5일
제115회(임시회)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)

가. 개정이유
○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·관리조례중 장애자·국가유공자·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사용료 할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복지행정구현에 앞장서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○ 국가유공자 50% 할인
○ 장애자(장애 1~3급) 40% 할인(보호자 1인 포함)
○ 장애자(장애 4~6급) 20% 할인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% 할인
○ 경로우대자(65세 이상) 20% 할인
※ 단, 중복할인 불가

다. 참고사항
○ 관계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)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(정부의 시책)
-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(복지증진의 책임)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제)

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장애자·국가유공자·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일정비율 할인하는 것으로,

가. 입법형식으로 볼때

○ 별표를 두는 이유는 본문으로 규정하기에 내용이 복잡할 경우 법문의 편이성, 간결성, 정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본문의 위임이 있을때 별표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따라서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 제9조(사용료의 감면)에 감면 대상을 정한 후 별표에 내용을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

나.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

○ 국가유공자의 경우 조례안과 같이 국가유공자에 한하여 사용료의 50%를 할인할수도 있으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한 할인대상의 범위 1.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, 2.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3.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인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
○ 장애인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감면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최대 50%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안과 같이 20% ~ 40%로 장애정도에 따른 차등을 두어 할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경로우대자에 대한 할인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

4. 修正案 要旨

가. 수정요지

○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신설하고, 경로우대자 할인율 상향 조정과 비고란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범위와 중복할인불가를 신설하여 수정

나. 수정 주요골자

○ 제9조제4호 국가유공자,장애인,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,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를 신설하고,

○ 별표2중 3.사용료 할증 및 할인란 ⑤의 경로우대자(65세이상) 30%할인과 단, 중복할인 불가 삭제

○ 란외에 비고란에

1. 국가유공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한자로 한다.

2. 중복할인불가 신설

5. 審査結果 : 修正案 可決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.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
의안 번호	관련 171호

제출년월일 : 2005.09.05.
제 출 자 : 강두석 위원

1. 수정이유

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, 경로우대자 할인율을 상향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수정.

2. 주요내용

○ 제9조제4호 국가유공자,장애인,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,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 신설

○ 별표2중 3.사용료 할증 및 할인란 ⑤의 경로우대자(65세이상) 30%할인과 단, 중복할인 불가 삭제

○ 란외에 비고란에

1. 국가유공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한자로 한다.

2. 중복할인불가 신설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.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.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

○ 제9조제4호 국가유공자,장애인,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,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 신설

○ 별표2중 3.사용료 할증 및 할인란 ⑤의 경로우대자(65세이상) 30%할인, 단, 중복할인 불가 삭제

○ 란외에 비고란에

1. 국가유공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한자로 한다.

2. 중복할인불가 신설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.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제9조(사용료 감면)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	제9조(사용료 감면)(현행과 같음)	제9조(사용료 감면)(개정안과 같음)
1.(생략)	1.(현행과 같음)	1.(개정안과 같음)
2.(생략)	2.(현행과 같음)	2.(개정안과 같음)
3.(생략)	3.(현행과 같음)	3.(개정안과 같음)
	<신설>	4.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, 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.
별표2(하단)	별표2(하단)	별표2(하단)
1.(생략) 2.(생략) 3.사용료 할증 및 할인 ① ~ ④(생략) 4.(생략)	1.(생략) 2.(생략) 3.사용료 할증 및 할인 ① ~ ④(생략) ⑤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할인 - 국가유공자 50%할인 - 장애인(장애1~3급) 40%할인 (보호자 1인 포함) - 장애인(장애4~6급) 20%할인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%할인 - 경로우대자(65세이상) 20%할인 ※ 단, 중복할인 불가 4.(현행과 같음)	1.(생략) 2.(생략) 3.사용료 할증 및 할인 ① ~ ④(생략) ⑤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할인 - 국가유공자 50%할인 - 장애인(장애1~3급) 40%할인 (보호자 1인 포함) - 장애인(장애4~6급) 20%할인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%할인 - 경로우대자(65세이상) 30%할인 <삭제> 4.(개정안과 같음)
	<신설>	비고 1.국가유공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한자로 한다. 2. 중복할인 불가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·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171

제출년월일 : 2005. 8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·관리 조례중 장애자·국가유공자·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사용료 할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복지행정구현에 앞장서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국가유공자 50% 할인
나. 장애자(장애 1~3급) 40% 할인(보호자 1인 포함)
다. 장애자(장애 4~6급) 20% 할인
라.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% 할인
마. 경로우대자(65세 이상) 20% 할인
※ 단, 중복할인 불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-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(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)
-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(정부의 시책)
-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(복지증진의 책임)

나. 합의사항 : 필요없음
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라. 입법예고 : 2005. 7. 15 ~ 2005. 8. 5(20일간) → 의견없음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관리조례 개정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·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·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2 중 후란 3.사용료 할증 및 할인 항목④ 다음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에 대한 할인 - 국가유공자 50% 할인 - 장애인(장애 1~3급) 40% 할인(보호자 1인 포함) - 장애인(장애 4~6급) 20% 할인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% 할인 - 경로우대자(65세이상) 20% 할인 ※ 단, 중복할인 불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사용료 할증 및 할인	3. 사용료 할증 및 할인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할인 - 국가유공자 50% 할인 - 장애인(장애1~3급) 40%할인 (보호자 1인 포함) - 장애인(장애4~6급) 20%할인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%할인 - 경로우대자(65세이상) 20%할인 ※ 단, 중복할인 불가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